

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남홍숙 의원 대표발의)

용 인 시 의 회

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22 - 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발 의 자 : 남홍숙 의원

☐ 구 분 : 일부개정

☐ 개정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의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위임된 실별 최소 면적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의 건축기준 신설(안 제15조의2)

☐ 개정조례안 : 별첨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☐ 관계법령 발췌서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, 별표 1
- 「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」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)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,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공간(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. 이하 같다)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.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
2.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,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3.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.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

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 속	입 안 자
도시건설위원회	남홍숙 의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)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</u> <u>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</u> <u>별 최소 면적, 창문 설치 및 크기 등</u> <u>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개인공간(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</u> <u>는 공간. 이하 같다)의 최소 면적</u> <u>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.</u> <u>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</u> <u>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</u> <u>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</u> <u>2.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</u> <u>1개 이상을 설치하고, 모든 창문과</u> <u>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</u> <u>설치할 것</u> <u>3.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</u> <u>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</u> <u>록 설치하고 0.5제곱미터 이상의</u> <u>크기로 설치할 것</u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5 관련)

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
거. 다중생활시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,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
□ 「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」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건축기준) 다중생활시설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.

1.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(단, 샤워부스는 가능)
2. 다중생활시설(공용시설 제외)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
3.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(책상 등)을 갖추는 것
4. 시설내 공용시설(세탁실, 휴게실, 취사시설 등)을 설치할 것
5.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.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(0.5제곱미터 이상)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.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
6.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.2미터이상, 중복도 1.5미터이상으로 할 것
7.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「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」에 적합할 것
8.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범죄예방 건축기준」에 적합할 것

제3조(지역별 기준 설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,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